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20.] [조례 제1622호, 2024. 3. 20., 일부개정]

대구광역시 동구(복지정책과), 662-251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6.30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4.3.20.>
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 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4. "보훈단체"란 대구광역시 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6. "선순위자"란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각 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. <신설 2017.12.29, 개정 2024.3.20.>

[제목개정 2017.12.29.]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<개정 2017.12.29, 2024.3.20.>

제4조(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)

-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, 2024.3.20.>
- 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, 2024.3.20.>
- 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0.>
 - 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 - 2.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, 초청된 희생·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
- 4.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
- 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- 6. 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
- 7.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각종 표식 제작
- 8.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·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·공헌자의 업적 선양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4.2.28>

- 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
- 2. 호국·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·전적지 순례비용 등
- 3.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
제7조(복지지원 등)

-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0.>
- 1. 구가 설치 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
- 2.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
- 3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·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
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20.>

제8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

-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5.30, 2024.3.20.>
- 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<개정 2019.5.30.>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<개정 2019.5.30.>
- 3. 「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<신설 2019.5.30.>
-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, 지급방법,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29.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9조 <삭제 2024.3.20.>

제10조 <삭제 2024.3.20.>

제11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0.>

제12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[제10조에서 이동 <2017.12.29.>] [제13조에서 이동 <2024.3.20.>]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6.30.>

[제9조에서 이동 <2017.12.29.>] [제12조에서 이동 <2024.3.20.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956호, 2014.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조례 제7조의2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개정 2015.6.30. 조례 제102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 조례 제1211호, 2017.12.29.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278호, 2019.5.30.>

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조례 제1395호, 2020.7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622호, 2024.3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